

##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5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gim72@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
|----------|--|

발의연월일 : 2022. 10. .

발 의 자 : 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 1. 제안이유

- 올해 1월 관내 모든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문구 삭제(제2장 삭제)
- 나. 정의 조항에 “주민자치회” 신설(안 제2조제3호)
- 다.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개정(안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 등)

## 3. 관련법령

- 해당없음

##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자치회”란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주민자치센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와 협의하여 당해”를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해당”으로, “위원회의”

를 “주민자치회의”로, “위원회에서”를 “주민자치회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회는”을 “주민자치회는”으로, “위원회의”를 “주민자치회의”로, “위원회에서”를 “주민자치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가 징수한”을 “주민자치회가 징수한”으로, “위원회가 동장”을 “주민자치회가 동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는”을 “주민자치회는”으로, “위원회에서”를 “주민자치회에서”로,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원회가”를 “주민자치회가”로, “위원회의”를 “주민자치회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서”를 “주민자치회에서”로, “위원회의”를 “주민자치회의”로 한다.

제3장(제14조, 같은 조, 제15조, 같은 조, 제16조, 같은 조, 제17조, 같은 조, 제18조, 같은 조, 제19조, 같은 조, 제20조, 같은 조, 제21조, 같은 조, 제22조 및 같은 조)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23조) 본문 중 “위원회 회의”를 “주민자치회 회의”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24조) 중 “위원회 운영”을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위원회의”를 “주민자치회의”로 한다.

별표 중 “위원장”을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u>제1장 총칙</u>                                                                                                                                      | <u>&lt;삭 제&gt;</u>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등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u>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br>-----<br>-----<br>----- <u>관한</u> -----<br>-----<br>-----<br>-----.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2. (생략)<br><u>&lt;신 설&gt;</u>                                                                            | 제2조(정의) -----<br>-----.<br>1. 2. (현행과 같음)<br>3. “주민자치회”란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
|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br>1. ~ 5. (생략)<br><u>제2장 주민자치센터</u>                                | 제3조(원칙) -----<br>----- <u>한다</u> -----<br>-----<br>-----<br>-----.<br>1. ~ 5. (현행과 같음)<br><u>&lt;삭 제&gt;</u> |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기능)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및 그 변경사항 등은 동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동별 특성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

제4조(설치 등) ① -----  
-----  
-----.  
-- 해당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  
-----  
-----  
-----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포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  
-----.

② -----  
----- 주민  
자치회-----  
-----  
-----

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6조의2(모집 및 채용)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와 자치센터의 운영사무를 담당할 사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한다.

② 동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당해 동 주민센터의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채용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채용한 사람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1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 금액을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모집 및 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자치회-----  
-----  
-----  
-----.

제7조(운영) ① ----- 주민자치회-----  
-----  
-----.

② -----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해당 -----  
-- 주민자치회의 ----- 주민자치회에서 -----  
-----  
-----.

③ 주민자치회는 ----- 주민자치회의 ----- 주민자치회에서 -----  
-----  
-----  
-----.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시장은 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위원회에서 채용한 사람 등 자치센터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연수 또는 체육대회 등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 (생략)

제8조(주민참여) ① (생략)

-----  
-----  
-----.

④ -----  
주민자치회-----  
----- <단서 삭제>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 주민자치회 위원-----  
----- 주민자치회-----  
-----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 등) ①·② (생략)

③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수강료의 징수 금액과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동장과 협

② -----  
-----  
-----  
----- 주민자  
치회-----  
-----  
-----.

제10조(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주민자치회-----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주민자치회-----.

③ -----  
-----  
-----  
-----

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저소득층 또는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와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채용한 사람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집행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생략)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 주민자치회-----  
-----  
-----  
-----  
-----  
-----.

④ -----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 주민자치회가 동장  
-----  
-----  
-----  
-----  
-----  
-----.

⑤ -----  
-----  
-----  
--- 주민자치회는 -----  
-----  
--- 주민자치회에서 -----  
-----  
주민자치회의 장 -----  
-----.

제12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민자치회가 -----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장은 위원회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① 동장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징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4조(설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위

-----  
----- 주민자치회의  
-----  
-----  
-----.

제13조(보고) ① -----  
----- 주  
민자치회-----  
-----  
-----.

② ----- 주민자  
치회에서 -----  
-----  
-----  
----- 주민자치  
회의 -----  
-----  
-----.

### <삭 제>

<삭 제>

<삭 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남·여 각 1명, 감사 1명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의 관할 구역 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을 3명 이내까지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2.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자치조직의 추천

3.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예술 등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봉사정신과 자

<삭 제>

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하고,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  
술계, 경제계 및 일반주민 등 각  
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며, 어느 한 계층  
에 소속된 위원과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  
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  
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  
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  
다. 다만, 당해 선거구의 시의원  
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비례  
대표 시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거주지 동의 당연  
직 고문으로 추가 위촉한다.

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한 차례만 재선출할 수 있  
다.

⑦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⑧ 동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⑨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공고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촉해제)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의 거주 또는 거소 요건을 잃은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출타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삭 제>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거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  
위를 한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해  
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위촉이 해제된 위원  
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위원회의 수입과 지  
출에 대하여 반기별로 감사를

<삭 제>

실시하고 감사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및 고문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와 주민의 의견수렴,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삭 제>

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 공개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원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사항은 동장과 협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센터의 특성에 따라 4개의 분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삭 제>

<삭 제>

제22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주민

자치위원회 등의 단체가 주민자  
치센터의 활성화 및 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능 수  
행과 관련된 주민자치기능강  
화사업

2.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선진지 견학  
및 위탁교육

3. 주민자치박람회, 전시회, 경  
연대회, 경진대회 등의 개최,  
참가 및 견학

#### 제4장 보칙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

<삭 제>

#### <삭 제>

제14조(수당 등) 주민자치회 회의

-----  
-----  
-----  
-----  
----. -----  
-----  
-----.

제15조(시행규칙 등) -----

|                                                                                                    |                                                                                                      |
|----------------------------------------------------------------------------------------------------|------------------------------------------------------------------------------------------------------|
| <p>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u>위원회 운영</u>에 따른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u>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 <p>-----</p> <p>----- <u>주민자치회 운영</u></p> <p>-----</p> <p>---- <u>주민자치회의</u> -----</p> <p>-----.</p> |
|----------------------------------------------------------------------------------------------------|------------------------------------------------------------------------------------------------------|